

2021년 전북 성장육성 바우처 - 기업지원 창업기업 모집 공고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창업기업의 경쟁력 Scale-UP과 도약을 위한 초단계 성장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위한 「2021년 전북 성장육성 바우처 - 기업지원」 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4월 6일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I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전북도내 창업 기업의 성장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통한 혁신기업 육성

□ 모집대상 : 창업 7년 이내('14.1.1. 이후) 기업 및 센터 관리기업*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기업

- 센터 관리기업 외 창업 7년 이내('14. 1. 1.이후) 기업과 센터 관리기업 중 7년 이상 기업(신제품(신사업) 개발에 한함)은 총 사업비 10% 이내 선발 예정
- 최근 3년 이내 동일분야 과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모집기간 : 2021년 4월 7일(수) ~ 4월 21일(수) 18:00까지

□ 선정규모 : 총 40건 내외

□ 지원내용

- 제품 개선 및 기술고도화 분야 최대 15,000천원 지원
- 마케팅 활성화 분야 최대 15,000천원 지원

※ 창업기업 대응자금 : 지원금의 30% (현금 10%, 현물 20%) 구성 필수

- 맞춤형 심화 멘토링 지원

II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창업 7년 이내('14.1.1. 이후) 기업 및 센터 관리기업*

* 센터 관리기업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기업

- 센터 관리기업 외 창업 7년 이내('14. 1. 1.이후) 기업과 센터 관리기업 중 7년 이상 기업(신제품(신사업) 개발에 한함)은 총 사업비 10% 이내 선발 예정

○ 최근 3년 이내 동일분야 과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창업기업의 업력 판단기준

구분	확인 서류 및 기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법인기업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성립연월일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거나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 [참고1]의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결정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신청 시 신청인 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함)

□ 신청제외대상

※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 공고 마감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 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舊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2] 참조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기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III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기업지원 바우처 사업화 지원

분야 1) 제품 개선 및 기술고도화(최대 15,000천원)

분야 2) 마케팅 활성화(최대 15,000천원)

< 지원항목 >

분야	세부분야	세분야
제품개선 및 기술 고도화	제품디자인	• 생활용품, 의료, 통신기기, 전기전자, 식품 등
	시각디자인	• CI, BI, 캐릭터 개발 등
	포장디자인	• 포장디자인 개선 등
	목업·금형	• 제품화 목업 및 금형
	지식재산권 등록	• 특허 타당성 분석, 국내외 특허등록, PCT 출원·등록, 상표 등록, 실용신안 등록 등
	기술가치평가	•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국가공인인증기관 (기술보증기금) 기술가치 평가 등
마케팅 활성화	미디어 마케팅	• TV(PPL포함)·신문·잡지·온라인(검색엔진/인플루언서) 광고 등
	홍보물 제작	• 동영상, 브로슈어·웹페이지 제작 등
	바이어 발굴	• 해외 전시회 참가(부스비, 장치임대료, 운송비, 통역비, 항공료) 등 • 국내 전시회 참가(부스비, 장치임대료) 등 • 해외바이어 초청경비(항공비, 통역비, 숙박비) 등
	판로지원	• 국내외 온오프라인매장 입점대행비용 및 수수료 등

- 기업당 최대 총 30,000천원 지원
 - ① 분야별 최대 15,000천원까지 지원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② 2개 분야 중복 지원 가능
- 창업기업 대응자금은 지원금의 30%(현금 10%, 현물 20%)로 구성

< 사업비 구성(예시) >

합 계	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19,500,000원	15,000,000원	1,500,000원	3,000,000원
	(100%)	(지원금의 10%)	(지원금의 20%)

* 현물 : 인건비(창업기업 본인 및 기존 임직원), 보유 기자재, 사용 중인 사무실 임차비 등

○ 혁신코디 매칭 및 맞춤형 심화 멘토링 지원

- 바우처 선정기업 대상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심화 멘토링 운영
- 총 6개월간(6월~11월) 온라인 및 현장 프로그램으로 운영,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 예정
- 월별 수요조사를 통해 혁신코디 매칭 후 멘토링 운영 일정 안내 예정

< 운영내용 >

구 분	세 부 내 용		
지원내용	전문 멘토링	기업진단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기초현황 분석(1회)
		심화코칭	전문가 1:1 맞춤형 코칭 (1회)
	네트워킹	전문가와 창업기업 만남의 날 운영	
멘토링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창업) : 사업계획수립, 시제품개발, 창업자금, 창업세무 등 · 마 케 팅 : 국내외마케팅전략, 기업홍보, BI·CI, 포장/디자인개발 등 · 투자지원 : 제안서(PT)작성, 펀드활용, 재무분석관리, 투자가치평가 등 · 기 술 : 분야별 기술 컨설팅, 상용화 상담, 기술개발 등 · 유 통 : 온오프라인 시장 입점, 유통채널확보, BM 고도화, 수익창출 등 		

□ **지원규모** : 총 40건 내외, 최대 총 30,000천원 지원

※ 특화분야(농생명·바이오, 금융·빅데이터, 탄소융복합·소재)기업 및 VC/AC 추천 및 평가(성장율, 기업 가치, 비전 등)를 통해 집중육성을 위한 예산 범위 내 지원비 추가 지원

□ **지원기간** : 최종 선정 및 협약일 ~ 2021년 8월(바우처 사업화 지원)

IV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1년 4월 7일(수) ~ 4월 21일(수) 18:00까지
 -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 2~3일 이전에 '온라인 신청'을 미리 진행할 것을 권장(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며, 마감시간 이후 불가)
- 접수처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온라인 신청 페이지(<http://event.jbci.or.kr>)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
 - (양식)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온라인 제출

< 온라인 신청절차 >

① 온라인 신청 페이지 접속 → ② '사업신청' 메뉴 선택 → ③ 전북 성장육성 바우처 기업지원 '신청하기' 선택 → ④ 기본정보 입력(특수문자 입력 시 제출 불가) → ⑤ 신청서 업로드(용량제한 30MB 유의, 파일형식 PDF) → ⑥ '온라인 접수' 제출 → ⑦ '신청-접수확인' 메뉴 선택 → ⑧ 신청정보 (신청사업명, 이름, 휴대전화, 비밀번호) 입력 → ⑨ '접수현황확인'

□ 제출서류

※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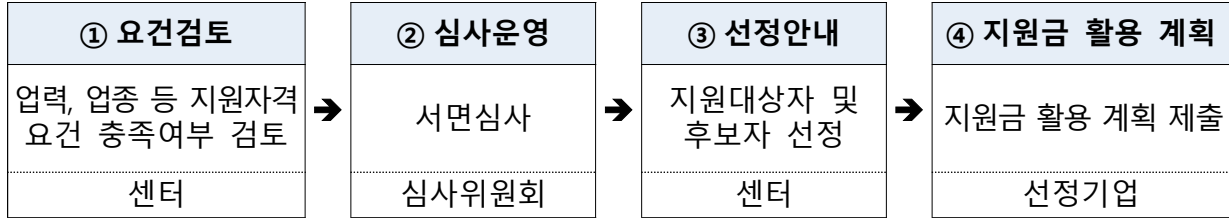
구분	제출서류	필수여부	비고
1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분야: 제품개선 및 기술고도화 / 마케팅 활성화)	필수	각 분야별 작성
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구분	증빙서류	필수여부	비고
1	■ 대표자 신분증	필수	-
2	■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증명원(폐업 이력 있을 시)		-
	■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사실증명(폐업 이력 있을 시)		
3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4	■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2020년도
5	■ 실적자료(매출, 수출, 투자, 고용 등)	선택	해당자
6	■ 기타자료(지식재산권, 벤처기업확인서 등)	선택	해당자

V

심사 및 추진일정

□ 심사방법 및 절차

< 심사 및 일정 >



- ① (요건검토) 신청자의 신청 자격검토 과정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필수 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시 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 ② (심사운영) 경제성 및 사업화 효과, 사업계획 적정성, 파급성, 중복 지원 검토 등을 평가
- ③ (선정안내) 지원대상자 및 후보자 선정, 사업화지원금 최종 확정 안내
- ④ (지원금 활용 계획) 확정 지원금 활용 계획 작성 및 제출

□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VI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서류접수 시 마감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센터는 책임지지 않음
-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정부 및 지자체 창업지원 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 선정 후 유의사항

-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가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끝.

참고 1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

□ 창업여부 기준

창업이력	신청기업 구분 (판단기준)	상세 구분			창업여부	
상속/증여	개인 / 법인	기존의 개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여부 무관	등종유지		불인정	
			이종창업		창업	
창업이력 있음	개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불인정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등종창업	이종창업		창업
				폐업 3년 초과		창업
			동종창업	부도/파산 2년 초과		창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창업	
	법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등종창업	이종창업		창업
				동일인인 경우		불인정
			동일인이 아닌 경우		창업	
			법인전환	기존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창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창업
			등종창업	동일인인 경우	폐업 3년 초과	창업
					부도/파산 2년 초과	창업
			동일인이 아닌 경우		창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자회사 해당			불인정		
	자회사 해당되지 않음			창업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창업		

1. "기존 사업을 폐지하고"란 사업자등록을 반납 또는 취소 조치함을 말함
2. 이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5자리)를 달리하고 당해 매출액의 50%를 넘는 경우
3. "동일인"이란, 개인사업자가 단독 또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서 기존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함
 - 가. 법안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 포함)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 나.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주식의 지분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경우
4. "친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
5. "자회사"란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로 다른 법인을 설립한 경우를 말함.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과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
6. 중소기업 폐업이후 3년 이후의 동종 업종 개시는 창업 인정(부도·파산 2년)
7. 창업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준에 따르도록 함

참고 2**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9124
6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